

**2023년 (재)양구군스포츠재단
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보고
[2회 추경]**



양 구 군
(경제체육과)

2023년 (재)양구군스포츠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보고(2회 추경)

2023년 재단법인 양구군스포츠재단 출연 총액(2회 추경)이 2022년 대비 **10%이상 증액**되어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양구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

□ 검토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
□ 출연금 증액 계획(안)

- 개요
 - 대상 : 재단법인 양구군스포츠재단
 - 근거
 - 「지방자치단체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- 「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
 - 출연액

시 기	2022년 총액	2023년 본예산	2023년 2회추경(예정)	증 액
금 액	금3,224,055천원	금7,749,134천원	금7,884,134천원(경정)	금135,000천원 (2023 당초대비)
목 적	하반기 법인운영 및 자본금 출연	2023년 법인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	2023년 하반기 공공운영비 증액출연	

표1 2022 ~ 2023년 출연(예정)액(회계연도 간 누계)

- 증액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2회추경 (A)	당초예산 (B)	증감 (A-B)	비고
합계		344,292	209,292	135,000	
시설운영	공공운영비	344,292	209,292	135,000	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

- 증액사유

-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예정(20% 이상)
- 양구군 공공체육시설을 수탁·운영관리하고 있는 양구군스포츠재단에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한 공공운영비를 증액 출연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○ 재단 2023년 주요사업 계획

- 법인운영 활성화
 - 양구군스포츠재단 활성화 및 주민홍보 관련 연구용역 추진
-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추진
 - “스포츠-관광-지역경제” 연계 스포츠마케팅 프로그램 추진
 - 양구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및 경제효과 연구용역 실시
- 관내 체육시설 관리·운영
 - 스포츠마케팅 추진기반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체육 시설 효과적 관리·운영 확대

□ 타당성 검토결과

○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

- 공공체육시설 운영·관리는 주민 체육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서,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충분한 공공운영비 필요

○ 출연금 증액이 미치는 효과

-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

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주민의 체육복지 증진 및 복리 증진 예상

-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

효과적인 공공시설 운영으로 주민활동을 증진하고, 이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주민들의 여러 소비활동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-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

2회 추경 증액분(금135,000천원)은 당초 출연액(금7,749,134천원)의 1.7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양구군 지방재정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

□ 종합의견

○ 투자 적정성,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, 지방경제·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, 재단법인 양구군스포츠 재단의 2023년 출연액 증액(2회 추경)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○ 또한, 출연 증액과 동시에 공공운영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각종 방안(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)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이에 따라 양구군의 지속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. 끝.

관련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(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·출연 기관을 포함한다)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
2.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
3.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)

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
2.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

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“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
2.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
3. 출자·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

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(이하 “타당성 검토”라 한다)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.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.